##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08 발의연월일: 2020. 12. 3.

발 의 자:이개호・위성곤・유동수

윤재갑 · 송갑석 · 서삼석

홍성국 · 김병기 · 인재근

주철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어업인안전보험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이나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보상하 기 위한 보험임.

그러나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이나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.

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신설).

##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및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 ①・	제4조(국가 등의 재정지원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
	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
	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
	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
	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보험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	
령령으로 정한다.	,
제6조(피보험자) (생 략)	제6조(피보험자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
	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
	구하고 「산업재해보상보험
	법」 및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
	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적용받는
	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
	지정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
	보험자가 될 수 있다.